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함(안 제4조 및 제9조).
-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관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에 대하여는 자격취

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6조 신설)

II. 검토의견

안 제9조제5항에서는 기상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한편, 안 제23조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 기상청장의 자격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등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조¹⁾에서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기상청과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u><신 설></u>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u>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u><신 설></u>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u>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또한, 안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기상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기관 또는 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법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3.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록 법문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기상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u>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 ----- <u>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u>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